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요약

□ 2023년 달라지는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 확대 등
 - 8명 ⇨ 10명 내외, 인센티브 조정
-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전심사 시 내부망 직원 투표 도입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확대
 - 소송 지원 의무화 및 퇴직공무원까지 소송 등 지원 범위 확대



공 주 시

목 차

I. 적극행정 추진현황	1
1. 추진배경	1
2. 2022년 주요 추진 성과	1
3. 반성 및 평가	2
II. '23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3
1. 적극행정 추진 여건	3
2. 적극행정 추진 방향	4
III. 공주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5
1. 적극행정 전담부서·지원부서 체계 정비	5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6
3.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지원	7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2
1.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 확대	12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보상 강화	14
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5
1. 사전컨설팅 활성화	15
2.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16
3.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활성화	18
4.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21
VI.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22
1.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22
VII.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23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23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24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24
VIII. 향후 계획	26

I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적극적인 직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감사·소송 부담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 ◆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화해야 함.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하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함” (’23. 2. 7., 국무회의 시 대통령 말씀)
- ◆ “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문화 조성 필요” (’22. 5.24., 규제혁신 장관회의)
- ◆ “공직사회 적극행정 활성화에 감사원이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 (’23. 1.11., 국무총리 말씀)

2

2022년 주요 추진성과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연 2회, 8명 선발**(전년대비 2명 증가)
 - 시홈페이지, SNS 통한 온라인 투표 실시 및 결과 반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 ’21년 : (기본부여)승진가산점·포상휴가, (심의부여)성과급 S(최우수·우수)
 - ’22년 : ’21년 인센티브 + 기관장 표창, 인센티브 공무직까지 확대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적극행정 실행계획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등 제작 홍보
 - 우리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국 지자체 공유, 적극행정 온(ON), 시 홈페이지 게시
 - 타시군 우수사례 수시로 조직 내 게시판 활용 공유, 홍보

□ 적극행정위원회 역할 강화

- 적극행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 추가 위촉(4명)

□ 적극행정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를 위한 공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2022. 3. 15.)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1건
- 공직자 행정종합배상 공제 신청 : 6건

□ 시민 체감도 향상 노력

- 적극행정 중점과제 시민 추천 도입, 우수사례 시민 투표 실시
-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실시

3 반성 및 평가

□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 역량 및 인식 제고 노력 필요

- 업무 특성 및 조직문화 등으로 시민 불편·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
- 파격적 인사상 인센티브 확대로 직원들의 관심 제고는 있었으나, 선발 시기에만 집중, 적극행정 과제·사례 발굴을 위한 직원 역량 및 중요성 필요성 인식 제고 노력 필요

□ 적극행정 시민체감도 미흡

-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보다 현안 중심의 과제가 많아 시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적극행정 홍보 강화 필요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저조

- 적극행정 면책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활용이 저조하여 내부망(행정포털 게시판, 공문) 통해 체계적 안내 및 활용 독려

II

'23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1

'23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 적극행정 추진 여건 분석

✓ 강점(Strength)

-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부)단체장 주도 관심도 제고 노력
- 적극행정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내부 환기

✓ 약점(Weakness)

- 적극행정 전담 추진 조직 미비
- 적극행정 발굴 보고회, 경진대회 준비 등으로 인한 직원 피로도 증가 우려

✓ 기회(Opportunity)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제도 등 적극행정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발전
- MZ세대 젊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기대
-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수요, 관심 증대

✓ 위협(Threat)

-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부담으로 형식적인 사례 제출 경향
-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어려워 최초 제안자나 추진 공무원의 성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현안과제, 장기 미해결 과제에 대한 기피에서 오는 장애 요인 여전

□ 2023년 중점 추진할 사항

-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지원제도 홍보
 - 우수공무원 선발인원 확대 및 사전 선발방법에 직원 투표 도입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 적극행정 우수사례·지원제도 홍보 및 직원 역량 교육 실시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체계 의무화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신설
 - 퇴직공무원까지 소송 등 지원 확대 실시

□ 추진방향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의무화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보상 체계 등을 통한 동기 부여 및 활성화 동력 마련
- 적극행정 면책·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행정 실천 유도

□ 2023년 적극행정 전략 및 핵심과제

목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 및 소극행정 혁파

추진방향

- 적극행정 동기부여 강화 및 조직 내 적극행정 실천 유도
- 시민 참여·소통 강화로 체감도 향상
- 공직자의 업무수행태도 전환을 통한 소극행정 근절

추진전략

적극행정 실천 강화

- 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②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③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제도 내실화

핵심과제

적극행정 문화 확산

-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 확대
-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추진전략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① 적극행정 교육 실시
- ②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확산
- ③ 적극행정 시민 참여·소통 강화

핵심과제

소극행정 근절

- ①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②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고도화

Ⅲ

공주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1

적극행정 전담부서·지원부서 체계 정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 추진방향

- 법무, 규제, 인사, 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적극행정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책임관) 및 분야별 업무담당 부서를 지정 운영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감 제고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 지원부서 : 행정지원과
- 추진부서 : 전 부서 및 읍면동
- 추진체계도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적극행정 업무 총괄(의회법무규제, 감사, 조사) - 실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 적극행정과제 및 우수공무원 선정, 교육·홍보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의견제시, 소송 및 법제 지원 -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지원부서(인사, 서무)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완화

□ 향후계획

- 부서별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1회
- 적극행정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자체 추진계획 수립 추진 :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1조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 ~ 제10조

□ 추진방향

- 시민 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사안, 장기 미해결과제, 규제애로 해소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쟁점 해결 및 적시 대응
- 실행계획 수립, 주요성과 추진상황 점검 등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의견제시, 면책건의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로 현안 심의 기능 강화

□ 운영현황

- (구성) 14명(당연직 4, 위촉직 10)
- (위원임기) 2년, 1회 연임가능(① '22.3.3.~'24.3.2. ② '23.4.8.~'25.4.7.)
- (회의개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조정 시 수시 개최
- (기능) 심의·의결 대상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방향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적극행정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공무원(퇴직한 공무원 포함)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신설)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민간위원 해촉 규정 신설) 민간위원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참여 배제
 - ↳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23.5.22)

□ 향후계획

-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확정 : 6월 중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 5월, 10월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면책건의 등 심의 : 수시

3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지원

「2023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지역 현안 해결 관련 중점과제 선정
-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의미하며, 지체별 2~3건을 선정하여 실행계획에 반영

□ 추진방향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점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반영을 통한 특별관리
 - 적극행정 지원제도(의견제시, 면책건의 등)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 동력 제공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시 가점 부여

□ 선정기준 및 절차

-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현안 중심으로 과제선정

- ▶ 기존 업무 추진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 선제적 해결 및 혁신,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현안

- 과제의 중요성·시급성·적정성·난이도·과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
- 부서 발굴과제 취합 및 온라인 시민 추천 접수

○ 1차 선정 : 3건

- 심사단 : 기획감사실 주무팀장 및 국 주무부서 주무팀장 등 6명
- 심사방법 : 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과제를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고득점 상위 선정
- 심사기간 : 23. 5. 24. ~ 5. 31.
- 1차 선정 결과

연번	부서명	사업명(과제명)	비고
1	여성가족과	아동학대 의료자문단 운영	
2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 시험교육장을 활용한 무병 딸기묘 공급	
3	보건정책과	식품접객업 등 임시영업신고 시설기준 규정 마련	

※ **중점과제는 실적관리 대상이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시 가점 부여**

- 최종 확정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과제선정 및 관리**

- 중점과제 3건 선정 후 분기별 중점과제 성과 점검
- 의사결정 지원 및 면책, 우수공무원 선발 시 가점 부여
- 과제선정 결과, 분기별 점검 결과 및 최종성과 등 홍보

중점과제 1 아동학대 의료자문단 운영

□ 추진배경

- 전문의의 의료자문을 통해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피해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 지원

□ 추진상 문제점

-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신체 및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양상을 보임
- 아동학대 조사는 피해아동의 진술 및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정확한 아동학대 판단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해결노력

- 전문가의 의료 자문 및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의료적 자문
 -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검진 결과에 대한 자문
 - 피해아동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 자문 및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2분기 : 아동학대 의료자문단 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 3분기 : 아동학대 의료자문단 운영 및 자문 의뢰
- 4분기 : 아동학대 의료자문단 운영 결과 보고

□ 참고자료

- 아동학대 현황
 - 신고접수 및 판정 현황

연도	현황 신고접수	아동학대 판정		
		아동학대 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
2020	103	84	19	-
2021	157	94	63	-
2022	103	65	37	1

중점과제 2 스마트농업 시험교육장을 활용한 무병 딸기묘 공급

□ 추진배경

- 기후변화, 이상기상 등으로 인해 관내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육묘 후 재배하는 과정에서 시들음병, 탄저병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관내 전문육묘시설 부재로 인접지역(논산) 육묘장,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딸기묘를 구입하고 있어 보급체계 마련이 시급함

□ 추진상 문제점

-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 시험교육장’에서 무병 딸기묘 증식에 힘쓰고 있으나, 생산량 대비 수요량이 많아 관내 농업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 해결노력

- 적극적인 영농상담·현장지도를 통해 무병 딸기묘 육묘 기술을 보급하고, 관내 전문육묘시설 구축 필요성 인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분기 : 육묘 중점관리(온도·수분 조절, 시비, 토양소독, 병해충 방제 등)
 - 3분기 : 무병 딸기묘 보급 홍보 및 관내 무병 딸기묘 희망 농가 수요조사
 - 4분기 : 무병 딸기묘 공급 후 영농상담·현장지도를 통한 육묘 기술 보급 및 육묘시설 구축 필요성 인지 교육 실시
- ※ 딸기(설향) 분양 계획 : (1차) 8. 28. ~ 9. 1.(16,000주), (2차) 10. 30. ~ 11 .3.(10,000주)
- 2024. ~ : 딸기를 비롯한 다른 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의견 청취 후 운영방안 검토

중점과제 3 식품접객업 등 임시영업신고 시설기준 규정 마련

□ 추진배경

- 공주시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하는 먹거리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
- 각종 축제장 등 지역행사 시 참여하는 먹거리 업소에 대한 영업신고 관련 시설기준 근거 마련

□ 추진상 문제점

- 지역축제 등에서 먹거리 업소 운영 시 별도 시설기준 없이 위생교육 후 임시영업신고를 허가해 주고 있는 상황

□ 해결노력

-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하는 먹거리 업소 임시영업신고 시설기준 마련
 - 허용 대상
 - 지자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조리하는 경우
 -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등에서 영업할 경우 등
 - 대상 업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향후 추진계획

- 2분기 : 식품접객업 등 임시영업신고 시설기준 마련 및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하는 먹거리 업소 운영 시 임시영업신고 허용(석장리 구석기 축제, 바로마켓 금강직거래장터, 수국축제, 밤마실야시장 등)
- 3분기 ~ 4분기 :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하는 먹거리 업소 운영 시 임시영업신고 허용(대백제전 등)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선정 및 선발인원 확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업무 수행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문화 조성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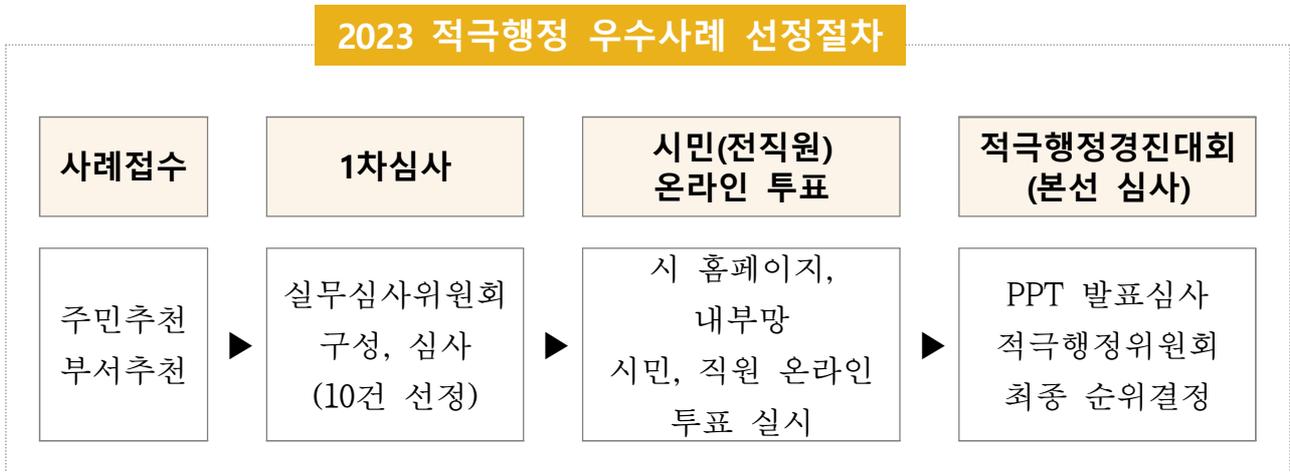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 선발시기 : 연 2회(상·하반기)/ 5월, 10월
 - 선발규모 : 10명(상·하반기 각 5명 내외/최우수 2, 우수2, 장려6)
- ※ 2022년 8명 선발(2명 증가*) *23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의견 반영

< 2023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목표 >

총 인원	상반기	하반기
10명	5명	5명

- 발굴방법 : 업무계획자료, 시군평가자료 활용 수시로 사례 접수
- 선발대상 :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비정규직 등 모든 구성원
- 선발기준 : 규제·관행 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선제적·창의적·도전적 정책 추진으로 성과 달성, 행정효율 향상 등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성과를 달성한 사례

- 선발방법 : 시민추천·부서 발굴 우수 사례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 적극행정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로 선발
 - (시민추천) 적극행정 온(ON), 시 홈페이지에 시민이 추천하는 자
 - (부서추천) 부서 발굴 추천 사례중 선발기준 요건 충족자
- 우대등급 : 성과의 우수성(중요도·난이도·파급효과 등), 성과창출의 기여도, 노력도,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우수-장려 등급으로 선발
- 시민의견 반영 :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 반영으로 시민체감도 제고
 - ↳ 내부망 통한 직원 온라인 투표 실시(예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우수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변화 및 자발적 참여 유도

적극행정 = “징계” ⇨ 적극행정 = “포상”

- (기본원칙)

-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성과 및 개인희망,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

- 전체 우수공무원의 50% 이상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 중 1개 이상 반드시 부여

(우수공무원 전원 부여 : 승진가산점, 포상휴가, 기관장 표창)

* 파격적 인센티브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가산점, 장기교육, 국외연수

- 공무직 인센티브 부여 : 특별승급, 포상휴가, 기관장 표창

- (절차) 전담부서와 인사부서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구 분	역 할	관련 위원회
기획감사실	등급 결정 및 기관장 표창	적극행정위원회
행정지원과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인사위원회

- (지급시기) 상·하반기 2회
- (선발확대) 선발인원 확대(8명 ⇨ 10명 내외), 공무직 포함
- 인사상 인센티브 상향 조정, 기관장 표창 실시(연말 시상)

□ 향후계획

- 상반기중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행정지원과 협조)
- 10월 중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경진대회 개최)
- 12월 중 : 하반기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기관장 표창 수여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보상 강화

□ 추진방향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로 “적극행정을 하면 확실히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보상 강화
- 인사상 인센티브 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자긍심·영예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우대 방안 강구, 실행(기관장 표창 등)

□ 주요내용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상향 조정 <표. 파란글씨(○)>

우대 등급	파격적 인센티브(50%)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50%)					
	① 특별 승진	② 특별 승급	③ 성과급 최고 등급	④ 승진 가산점	⑤ 교육훈련 우선선발		⑥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⑦ 근속승진 기간단축	⑧ 포상 휴가	⑨ 희망 전보	⑩ 기관장 표창
					장기교육	국외연수					
	7급이하	6급이하, 공무원	모든직급	5급이하	6급이하		5급이하	7급이하	모든직급, 공무원	5급이하	5급이하, 공무원
	수시	3월	3월	4-10월	12월	별도계획	매월	수시	수시	인사시	12월
최우수		○	○	0.5점	○	○	○	○			
우수	전국, 도 경진대회 입상자		○	0.3점	○	○	○	○	최대 2일	△ (기관 여건 고려)	○
장려			○	0.2점	-	-	-	-			

비고1) 승진 가산점 : 상급기관(정부, 충남도) ‘우수’ 입상자는 한 단계 상향하여 가산점 부여(우수 0.3점 →최우수 0.5점) / 당해연도 선발 실적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유리한 1개만 인정함

비고2) 우수 공무원 전원 부여(④,⑧,⑨,⑩)외 사항은 우대등급에 따라 희망 조사하여 심의 후 부여 단, 교육훈련 우선선발(6급 이하): 장기교육국외연수(최우수), 장기교육국외연수 가점(우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5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 단축(7급 이하) : 1년(최우수, 우수)

< 2023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10명	10명(100%)

- 기관장 표창 시 상장 및 포상금 지급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 추진방향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서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권장

□ 주요내용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제도 활용
 -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 모호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 판단이 어려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항 및 그 밖의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
 -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감사단계), 징계의결 등 면제(징계단계)
- 대 상
 -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규정 등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감사 대상기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한 경우

< 제 외 대 상 >

- ▶ 민원해소·책임회피를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는 경우
- ▶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조사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또는 내부정책결정에 관한 사안 등

* 연도별 신청 현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	1	3	3	1	3	5	1

□ 향후계획

-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및 활성화에 대한 유공 포상 추진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홍보 강화(연중)

2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추진방향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주요내용

- 공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

○ 면책 기준

- 공익성, 적극성, 고의나 중대과실 없을 것 등

- ①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②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③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제외대상 :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 사전컨설팅 신청 후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함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 운영**

- (추진배경) 자체감사기구 간 면책제도 운영의 편차가 커 면책 제도의 실효성 및 공무원들의 신뢰도 저하
- (지정현황) 지자체 내 규제개혁, 법무, 적극행정 부서장 중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지자체장이 지정

⇒ 기획감사실장

- (주요역할)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면책·절차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 과정 등 제반사항에 대해 상담·지원 등
- (지원대상) 면책건의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향후계획**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적극행정 저해요인 의견수렴 : 연중
- 감사기간 중 감사반에 '현장면책'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및 운영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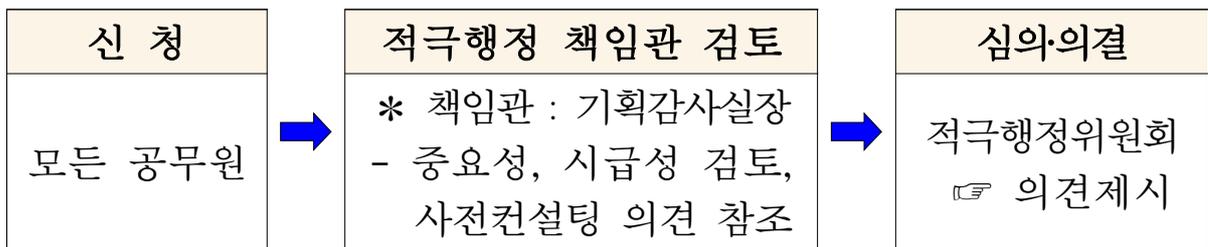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 추진방향

-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 제시로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

□ 주요내용

-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기획감사실장)에게 의견제시 요청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의견제시 절차



- (심의) 신청 후 15일 이내 적극행정위원회 상정 의결

○ 의견제시 효과

- 징계 등 면제
- 상급기관 감사 등에는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 등 면제
-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 감사시 징계요구 등 면책

※ 의견제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행정위원회는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기관에 면책 건의

□ 향후계획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전직원 대상 사전컨설팅제도, 의견제시 제도 안내자료 등 홍보활동 강화

<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비교 >

구 분	사전컨설팅			위원회에 의견제시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근 거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5	지자체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5	공공감사법 시행령 §13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12
주 체	적극행정지원담당관	중앙행정기관장	자체감사기구의 장	적극행정위원회
신청인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대상 기관의 장	공무원
대 상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는 등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①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②법령 해석에 따른 민원 업무, ③그 밖에 규제개선 업무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대상	①민원해소·책임회피 목적인 경우 ②자체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③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을 확인하려는 경우 ④감사·수사·행정심판·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①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②법령의 요건·절차가 명확한 경우 ③판례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④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일상감사 대상업무 ①주요정책 집행 ②계약업무 ③예산관리 업무 ④그 밖에 중앙행정 기관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외대상 설정 가능
효 과	징계 요구 등 면책, 징계등 면제	(좌동)	(좌동)	자체감사 징계 요구 등 면책, 징계등 면제
비 고	중요사안은 사전컨설팅 자문 위원회의에서 안건 심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자문 위원회 구성	의견제시가 곤란한 경우 상급 감사기구 또는 지원위로 의견 제시 신청 가능	사전컨설팅 내용이 이해관계가 침해하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자체감사기구 요청을 받아 의견제시 가능

-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쪽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 가능
-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 추진방향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구상권행사 제한) 행정업무에 의해 구상권 행사가 들어온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여부를 고려,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리 시 의견 적극 제출
- (변호비용 지원)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 의뢰, 형사피소, 손해 배상 청구된 공무원에 대한 소송 대리인 등 지원
 -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마련('23.3.)
 -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계획 수립(퇴직공무원까지 지원대상 확대)
- 지방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지방공제회)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목적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체계 구축
가입기간	2023.1.1.~12.31.(1년단위 계약갱신)
피공제자	공주시 전 직원(청원경찰, 공무원 포함)
배상대상	공무원 등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단체
배상한도	(민사)2억원 (형사)3천만원/연간 10억원
배상내용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협력비용, 대위권보존비용 등)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향후계획

-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신설 : 하반기
-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절차 이행 : 연중

VI

소극행정 예방 및 효과

□ 추진방향

- 소극행정 엄정 조치로 소극행정 효과
 - 소극행정 선제적 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 소극행정으로 확인 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 주요내용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소극행정 (재)신고센터 지속 운영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 내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지속 운영하여 감시·관리체계 강화
 - 자체 계획에 따라 소극행정 주기적 점검 실시
 - 공직기강 감찰 시 소극적 업무처리 병행 점검
 - 소극행정 확인 시, 비위정도·고의 및 과실 등을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조치
- 소극행정 유형 : 아래의 행위 등으로 인해 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②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분 류	정 의
적당편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국민 편익과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향후계획

- 소극행정 자체점검을 통한 소극행정 예방활동 강화 : 반기별
-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만족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 : 연중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사례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여 적극행정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도모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전 직원 대상 연 1회 적극행정 의무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사례 중심 교육
 - 인력처 소속 전문강사 활용, 양질의 교육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
-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이러닝 교육과정) 병행 실시

개설사이트	과정명
행안부 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적극행정의 이해
	다함께 적극행정

□ 향후계획

- 적극행정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 : 하반기
-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적극행정 관련 자료 게시 : 수시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추진방향

-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파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관련 제도 홍보함으로써 대내외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

□ 주요내용

- (주민 홍보) 적극행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SNS 및 시 홈페이지, 언론 등을 활용한 홍보
- (제작 및 확산) 자체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흥미도와 전달력이 높은 홍보 콘텐츠인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 온(ON) 및 SNS에 게재

□ 향후계획

-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 적극행정 지원제도, 우수사례 등 홍보물 제작 배포(리플렛, 포스터 등)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추진방향

- 일상에서 적극행정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배너 게시, 언론보도 등을 통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주요내용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① 공익적 목적, ②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신청한 사안, ③ 법령미비, 법령 불명확의 이유로 반려·불채택된 사안에 대해 신청
- 적극행정 중점과제 주민 추천 접수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관련 주민 추천 도입
-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민 온라인 투표 실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투표율 반영
 - ※ 상반기 기 시행: 4월 중, 1,064명 참여

□ 향후계획

-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후관리 철저 및 추진현황 수시 점검
-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방식 모색

□ 적극행정 관련 행정사항 추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전과
-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분기별 세부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추진경과 및 성과점검
- 적극행정 교육일정 계획수립 및 교육참여 독려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0월중)
-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연내)

주요 내용	일정	추진부서 (협조부서)
1. 적극행정 추진체계정비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발굴	6월	기획감사실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확정	6월	〃
○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분기별	
○ 마인드혁신! 적극행정교육	하반기	〃
○ 적극행정 법제지원	연중	〃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 배포 - 카드뉴스 제작, 배포	연중 6월, 12월	〃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우대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연중	기획감사실
○ 사전컨설팅제도, 면책제도 운영	연중	〃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5/10월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7월,12월	행정지원과
3.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점검	연중	기획감사실